

소 장

원 고 재단법인 기독교방송
대표자 이사 이재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영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전화: 02-723-0666 팩스:02-6919-2004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제재조치명령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4-12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제재조치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정도언론을 표방하며 티브이 및 라디오 방송 등을 영위하고 있는 방송재단입니다. 1954년 출범한 원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사로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도 민주주의 발전과 자유언론 창달에 기여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3. 11. 25.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합니다)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강론으로 논란을 빚은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방송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방송법 제100조 규정에 따른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원고에 대하여 2014. 2. 20.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자 이에 대해서도 2014. 7. 1.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한 자입니다.

나.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경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1. 25. 오전 8시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2부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시국미사 강론으로 논란을 빚은 박창신 신부 인터뷰를 10분 남짓 방송하였습니다. 박 신부 인터뷰 직후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각각 출연해 박 신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약 14분 동안 밝혔습니다.

피고는 2014. 2. 20. 위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하겠습니다) 제9조 제2항,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프로그램을 방송한 원고에게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갑 제1호증). 원고가 2014. 2. 24. 방송법 제100조 제6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7. 1.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심 제재조치명령대로 ‘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지내용¹⁾’을 방송할 것을 명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2.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사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공정성) 및 제14조(객관성) 위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프로그램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및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은 빚은바 있는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면서, 박 신부가 ▲ ‘이번 18대 대통령선거는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개입한 부정선거다’,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되고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오는 등 불법 선거한

1) 고지방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CBS-AM은 2013년 11월 25일에 방송된 ‘김현정의 뉴스쇼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엄청난 부정이다’ 등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발언을 방송하는 한편, ▲ ‘NLL은 독도보다 예민한 분쟁지역인데 거기서 한 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등 연평도 포격 사건이 NLL 인근에서의 한 미 군사훈련으로 인해 촉발된 것처럼 단정하는 발언 등을 방송한 바,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운 불명확한 내용들임에도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위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되도록 방치한 측면이 있고, 대체로 출연자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확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지하여 결과적으로 출연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는바, 이는 심의규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에 위반된다” 라고 그 처분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가 박 신부의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와 NLL 문제에 대한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의 위법성

그러나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회와 관련한 법령의 규정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①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박 신부를 인터뷰하게 된 경위, 인터뷰 위주로 구성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특성을 심의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② 피고가 밝힌 것과 달리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신부 발언의 근거를 묻거나 진

위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③ 박 신부의 인터뷰가 끝난 직후 그의 발언과 관련한 여야 국회의원 인터뷰가 이어지면서, 청취자들에게 박 신부 주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등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관련 규정

방송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93호, 2013.8.13., 타법개정]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 2012.12.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0호, 2012.12.12, 일부개정]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고려

(1)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심의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은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법 제32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는 데 있어 그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범주가 포괄하는 범위가 대단히 넓은 데다가 매체나 채널의 개별적이고 특유한 성격이 있는 만큼, 심의에 있어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같은 매체 또는 채널 안에서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정보나 의견이 교환되는 방식은 대단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시청자나 청취자의 입장에서 일반 뉴스프로그램의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의 방송 내용을 받아들이는 맥락이 다른 물론입니다. 그렇게 볼 때 방송의 공정성은 매체별·채널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0조가 사실 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 4. 11. 2012구합23266 판결)

(2) 이 사건 프로그램은 개별 사안에 대한 생방송 인터뷰들로 구성됩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기자들이 각기 취재한 내용을 취합해 보도하는 일반적인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인터뷰’를 중심으로 시사현안을 다룹니다. 주중 매일 1시간 30분씩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매일 4건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인터뷰 대상자는 대체로 사회적 논란의 직접 당사자나 관련 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갑 제3호증). 찬반 논란이 거세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의 경우 양쪽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방송 인터뷰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다보니,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프

로그래의 청취자들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출연자 개인의 주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일반적인 뉴스에서와 같은 정도의 공정성·객관성 기준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일반 뉴스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객관성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합니다. 뉴스의 경우 사전에 기사의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검토해 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경우 그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프로그램 진행자의 인터뷰 중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삼아 심의를 진행하고 징계한다면, 프로그램 제작진으로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 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타격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질 것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심의는 통상의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게 된 배경

(1) 박 신부의 시국미사 강론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며칠 전부터 첨예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은 2013년 11월 25일 월

요일입니다. 박 신부는 이로부터 3일 전인 2013년 11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열었고, 이날 박 신부의 강론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말 동안 수많은 언론이 이를 주요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경제 4호증의 1내지 3). 정치권에서도 박 신부의 강론 내용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박 신부는 언론의 거듭된 요청에도 강론 내용에 대하여 따로 해명하거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박 신부의 강론 내용을 두고 찬반 논란이 주말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작진은 논란의 당사자인 박 신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지 않던 박 신부는 방송 당일인 11월 25일 새벽에야 인터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사건 프로그램 인터뷰는 시국미사 강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박 신부의 첫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2) 인터뷰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인터뷰 내용의 중심을 11월 22일 시국미사 강론 내용에 대한 박 신부의 설명에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이 사건 인터뷰는 당사자의 입장 표명 없이 계속되어 온 논란에 대해 박 신부의 입장을 명확히 들어보는 데 그 주된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자가 박 신부의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면서 인터뷰에서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보다 일단 박 신부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아래에서 보듯, 제작진은 이럴 경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연이어 박 신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공정성·객관성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

다 하겠습니다.

라. 진행자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공세적 질문과 적절한 반론을 통해 출연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출연자인 박 신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박 신부의 일방적 주장을 방치하여 아무런 여과없이 전달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0분 여 동안 진행된 인터뷰 전문을 보면, 오히려 진행자는 박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점검하고, 때로는 반박하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음이 확인됩니다. 박 신부의 주장을 ‘방치했다’고 평가하기는 도무지 어려운 것입니다.

<박창신 신부 인터뷰 전문>(갑 제5호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주교 박창신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지난 금요일에 열었는데요. 그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의 사과와 문책 정도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국미사, 앞으로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먼저 이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직접 하신 분이십니다. 박창신 신부 연결을 해 보죠. 박 신부님, 나와 계십니까?

◆ 박창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잘 주무셨어요?

◆ 박창신> 네, 잘 잤어요.

◇ 김현정>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아닙니까?

◆ 박창신> 아니요. 할 말 다 했으니까 아주 좋아요.

◇ 김현정> 지금 정치권에서는 파장이 일파만파인데요, 신부님.

◆ 박창신> 일파만파지만 일파만파돼서 국민여론을 수렴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지난 금요일의 강론은 어떤 주제로 하셨던 건가요, 신부님?

◆ 박창신> 주제는 이번 18대 대통령선거가 국정원과 정부의 모든 기관이 합작해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들이 말하자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대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에서 제일 써먹기 좋은 것이 종북몰이예요, 종북몰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말하는 시대의 중추를 오늘날 종북몰이로 봤어요. 종북몰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 나라에는 항상 좌와 우가 있는 것이죠. 좌가 있고 우가 있는데 이 좌우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좌가 6.25전쟁이나 북한이 있기 때문에 좌가 적으로 규정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좌라고 하면 그냥 깜짝 놀라고 좌라고 하면 따돌리고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종북몰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군요.

◇ 김현정> 그런데 종북몰이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신 건 어떻게 된 거죠?

◆ 박창신> 그러니까 종북몰이를 이용해가지고 각 단체들이, 국가기관 단체들이 종북몰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선거에 개입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종북몰이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선거개입을 해서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지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진상규명 철저하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수사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더러 하야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선동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박창신> 지금 수사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검찰총장도 쫓겨나고 하는데, 다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수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 김현정> 지금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 박창신> 믿을 수 있겠냐고요, 국민들이요. 뒤에서 조종하고 감시하고.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하고 검찰이 제대로 될 하느냐 그 말이에요.

◇ 김현정>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철저히 수사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해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 박창신> 하야도 아니에요. 그냥 퇴진이에요, 퇴진.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박창신> 불법선거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지금. 현재 댓글도 121만개인가 이렇게 되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터에서 개표 조작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이죠, 이게. 엄청난 부정이죠.

◇ 김현정> 그런 선거로 당선이 됐으면 본인이 그걸 시켰든 안 시켰든 거기에 대해 책임지고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창신> 그럼요. 퇴진해야 하고 말고요.

◇ 김현정> 특히 강연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 여당측과 청와대측에서 문제삼는 부분이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거를 쏩니다.”

◆ 박창신> 아니, 내가 쓴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청중, 강론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쏘야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사람들이?

◆ 박창신>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NLL,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쏘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사건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창신> 내가 NLL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죠. 그러나 NLL이라는 것은 유엔군사령관이 해 놓은 것이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유엔군하고 서로 협상해서 만든 선이 아니고.

◇ 김현정> 남북이 협상한 선이 아니다?

◆ 박창신> 남한 쪽에서 월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1996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996년 15대 총선 때, 말하자면 북풍물이 한번 했었어요. 북한군 1개 중대가 박격포 가지고 관문점에서 하고 또 NLL에서 대치전이 있었거든. 그때부터 말하자면 NLL을 사수한다고 정부가 해서 그 뒤로부터 엄청난 서해교전이 있었잖아요. 5번인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NLL은 북한에서는 자기 영해라고 하고 남한에서는 NLL을 우리 거라 하고. 이게 지금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냥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분쟁지역. 이 분쟁이 어느 정도냐면 독도보다 더 예민한 분쟁지역이에요. 거기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분쟁지역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제가 거기서 예를 든 거예요. 말하자면 독도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 땅 문제가 있는데 일본군이 훈련하면 어떻게 하겠냐.

◇ 김현정>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잘 쫓다는 얘기가 아니라...

◆ 박창신> 잘 쫓다는 얘기가 아니죠. 청와대에서 그런 걸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 김현정> 평화를 이야기하다가 나온 한 예. 우리가 지금 평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혼란한 NLL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그 얘기가 나온 거다. 잘 쫓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 박창신> 그 얘기가 평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북몰이할 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 김현정> 자꾸 이용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와중에 나왔다?

◆ 박창신> 종북몰이는 뭐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 6월 15일날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북한에 가서. 그래서 화해가 됐잖아요.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열고 해서 평양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을 계속해야 하는데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NLL에서 훈련하니까 연평도 포격했잖아요. 적으로 완전히 규정해서 종북몰이를 하는 거예요. 종북몰이 과정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종북자들은 민족의 적이다 해서 지금 종북몰이를 온 세상에 펼쳐가지고 불안하잖아요.

◇ 김현정> 종북몰이에 대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이신데.

◆ 박창신>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야죠. 왜 완전히 서로 문제 일으키고 있는 분쟁지

역에서 훈련을 하나 그 말이에요. 싸움하려고요?

◇ 김현정> 그럼 신부님, 이랬든 새누리당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중북구현사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협박에 동조하듯이 사제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 중북 신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신의 영역까지 사제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창신> 그거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 김현정> 이런 문제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다?

◆ 박창신> 이 시대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가.

◇ 김현정> 시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정치개입을 종교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박창신> 정치가 부패하면 비판하고 해야죠. 안 그러면 더 문제가 있죠. 예수님 쪽이 아니죠.

◇ 김현정> 지금은 부패한 시대다, 이렇게 확정을 하시는 거예요?

◆ 박창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지금 억측만 난무하고 어디 법이 제대로 있고 검찰이 제대로 합니까, 법원이 제대로 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 김현정> 박 신부님,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 박창신> 해야죠.

◇ 김현정> 다른 교구로도 확산됩니다, 혹시?

◆ 박창신> 아마 조금 있으면 마산교회도 하고 할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여당에서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박창신 신부가.

◆ 박창신> 왜 석고대죄를...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야 이런 소리 안 듣죠. 안 그렇습니까? 중북몰이를 왜 하는 거예요, 중북몰이를.

◇ 김현정> 신부님, 강연을 우리가 다 같이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연결을 해 봤습니다.

◆ 박창신> 강론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 김현정> 청취자들에게 다 한 번씩 읽어봐라, 자세하게?

◆ 박창신> 네. 제 강론 읽어보면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지금 인터넷 치면 전문이 다 나오니까 다들 참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출처 = CBS 라디오 홈페이지]

인터뷰 전문을 보면, 진행자는 10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 신부의 주장과 대립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인터뷰의 균형을 잡아나갔음이 확인됩니다. 박 신부의 주장을 들어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는 질문 외에,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박 신부의 주장에 대하여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 부정선거, 지금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진상규명 철저히 하라고 박 대통령은 지시를 하고 수사 중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더러 하야하라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선동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신부가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를 믿을 수 없다’ 고 주장하자 진행자는 재차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철저히 수사해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야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는 질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 새누리당에서는 정의구현사제단을 중북구현사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협박에 동조하듯이 사제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 중북 신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신의 영역까지 사제들이 침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교회가 이 시대 이야기를 해야 한다’ 는 박 신부의 대답에 대해서도 ” 정치개입을 종교가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고 물었습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교회가) 비판해야 한다’ 는 박 신부의 대답에 대해 진행자는 또 한번 ” 박 신부님,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그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에서 보듯,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10분 남짓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박 신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박 신부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방치했다는 처분 사유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마. 객관성 위반에 대하여 : 박 신부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 박 신부 주장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서 박 신부의 NLL 문제나 지난 대선에 대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진행자가 방송에서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인터뷰를 하게 된 경위, 인터뷰시점에 이미 박신부의 발언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대해서는 박

신부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던 점,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김현정 앵커가 박신부의 발언과 관련하여 박신부와 다른 관점에서 박신부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신부와 인터뷰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신부 개인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박신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한 박신부의 의견을 밝히도록 한 것이므로 ‘객관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선, 박 신부는 인터뷰에서 NLL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뷰에서 박 신부가 “내가 NLL을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켜야죠” 라고 말한 데서도 확인됩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 박신부 주장의 취지는 ‘NLL이 분쟁지역이어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그곳에서의 군사훈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박신부의 의견이고 진행자가 의견을 묻기 위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이가 의견을 밝혔다고 해서 이를 제재한다면 인터뷰 형식의 방송 자체가 불가능하고 더구나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성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박 신부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단순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아니라 국정원, 군사정보사령부 등의 대선개입은 검찰수사와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실들로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온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 이에 대해 박 신부가 정부의 ‘모든’ 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인터뷰 시간이 10분에 불과했으며, 인터뷰의

초점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맞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인터뷰의 본질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박신부에게 대선개입 등에 관한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박신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면, 진행자가 이를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과도합니다.

바. 이 사건 인터뷰 직후 박 신부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살펴야 할 점은, 박창신 신부 인터뷰에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한 여야 의원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뷰가 박 신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을 우려해 인터뷰 직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 박 신부 주장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갑 제6호 증).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박 신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이 상태를 이렇게까지 온 과정에서 여당이 상황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문제가 커지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여당)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박 신부의 대통령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사제의 겸허하고 겸손한 영역을 훨씬 벗어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김 의원은 NLL 관련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분은 NLL의 역사적인 형성과정과 또 현재의 NLL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북방한계선 자체가 마치 북한의 영토인 양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영토 안에 들어가서 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쫓다는 이 논리인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매국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는 말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어진 민주당 최재성 의원 인터뷰에서도, 최 의원은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는 박 신부 발언에 대하여 “그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야하거나 사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접 대선에 불법개입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혹은 광범위한 조작과 개입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 NLL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박 신부 발언은 종북몰이의 사례로 연평도 문제를 얘기한 것’ 이라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일단 우리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안보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는 안보 없이는 안 된다. 안보도 평화 없이는 안 된다는 아주 전통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연평도 사건의 발단은 소위 말해서 호국훈련, 우리 군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지만 하여튼 그 포격훈련이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위협적으로 작용을 했고 당일날 중단하라고 전통문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도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나 제네바협정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없는 건데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박 신부에 대한 인터뷰가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었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를 설령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직후에 진행된 여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박 신부 주장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프로그램 제작진이 인터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4. 결론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 제 2014-12호 |
| 1. 갑 제2호증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심의 제2014-005호 |
| 1. 갑 제3호증 | CBS <김현정의뉴스쇼> 구성 |
| 1. 갑 제4호증의1내지3 | 2013. 11. 24.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
| 1. 갑 제5호증 | 2013. 11. 25. CBS <김현정의뉴스쇼> 중 박
창신 신부 인터뷰 녹취록 |
| 1. 갑 제6호증 | 2013. 11. 25. CBS <김현정의뉴스쇼> 중 김
재원·최재성 의원 인터뷰 녹취록 |

갑 제3호증에서 제6호증에 해당하는 증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 | 각 1부 |
|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각 1부 |
| 1. 송달료 납부서 | 1부 |
| 1. 소장 부분 | 1부 |
| 1.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2014. 7. 9

원고의 대리인 변호사 정민영

서울행정법원 귀중